

제주한라대학교 장애학생지원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제주한라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 학칙 제57조(장애학생의 지원)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장애”라 함은 교수·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.
- ②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된 학생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교수·학습지원)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우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지원
2. 도우미 배정
3. 교수, 학습 기자재 대여
4.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,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제5조(대학생활지원)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기숙사 등의 대학생활 지원
2. 장애학생 상담
3. 진로상담,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
4. 취학편의 및 편의시설 지원
5. 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제6조(심사청구) 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대학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본 대학교는 2주 이내에 지원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상자료관리) ①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.

② 지원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, 장애재학

생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신고)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부장에게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,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(심화)되어 유형,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장애학생 정보 제공) ① 교무처는 효율적인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·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·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, 해당 교·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장애학생지원센터)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원센터에 1인의 지원센터장을 둔다.

③ 지원센터장은 교직원으로 보하며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4.02.20.>

④ 지원센터에는 연구원 및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.

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
2. 교수·학습 지원 및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3.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, 개인상담
4.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
5. 취업진로 지원
6. 장애학생 이동지원
7.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
8.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
9.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

제11조(장애학생지원위원회) ① 장애학생 교육·복지 지원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교무처장, 학생복지처장, 정보전산센터소장, 도서관장, 한라학사사감, 관리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되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12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

2. 장애학생의 생활·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의 상담·진로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6.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

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